

#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건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2월 15일  
발 의 자 : 신건택·최호정·김종욱·문형주  
권미경·오경환 의원(6명)  
찬 성 자 : 진두생·이명희·송재형·박마루  
우미경·이성희·김진영·박운기  
서윤기·박중화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관련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금지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(안 제4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“재지정할 수 없다”를 “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4조(재지정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재지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
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 사항 없음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**4. 작성자**

- 서울특별시의원 신 건 택